

범칙자 적발 보고서		○ ○	○ 장	○ 장
<p>번호 : 20-</p> <p>수신 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서장</p> <p>제목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위반행위 보고</p> <p>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.</p>				
범칙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등록번호		전화번호	
	주소			
범칙행위	일시/장소			
	위반내용 (붙임: 증명자료)			
<p>시·군·구청 또는 경찰서 (특별)사법경찰관(리)(성명) (서명 또는 인)</p>				